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II.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재해대처계획의 신고¹⁾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써, 재해대처계획이 신고되어 수리되기까지 일정 간격이 있을 수 있어 그 적용시점을 부칙에 명

1)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협의하여 이를 주서에 반영함.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III. 관계기관 의견

경찰청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규정('24. 7. 17. 시행)하고²⁾, 다중운집인파사고 주관기관을 발생 장소별 15개 중앙부처로 분류함³⁾으로써 부처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즉, 정부 내에서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도로·광장·공원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문체부 주관인 공연장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통보받아 조치하는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담당 부처 및 책임의 명확화라는 「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문위원 이 화 실)